

## 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호	103
-----------	-----

제출년월일 : 2000. 4. 18.

발의자 : 이재창의원외4인

###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1999. 8. 31. 법률 제6002호 및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2호)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 및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연1회 개최하던 정기회를 연2회 정례회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2조)
- 나.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함.(안 제3조)
- 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8일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 집회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을 승인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5. 참고자료

- 가. 조례 준칙안(경북도 의사13131-8, 2000. 1. 14.) 1부
- 나. 정례회 집회일 및 회기결정 관련자료 1부
- 다. 관련법령(별첨) 1부

## 영주시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한다.

제5조(실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의 정례회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

②영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46조"를 "동법시행령 제46조의2"로 한다.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감사)①&lt;생략&gt;</p> <p>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u>정기회</u>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 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 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 다.</p> <p>③~⑤&lt;생략&gt;</p>	<p>제2조(감사)①&lt;현행과 같음&gt;</p> <p>② ..... <u>제1차 정례회</u> .... ..... ..... ....</p> <p>③~⑤&lt;현행과 같음&gt;</p>

###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 제3항, <u>동법시행령 제46조</u>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동법시행령 제46조의2</u> .. ..... ..... .....</p>

## 경상북도의회

☏702-702\* 대구·북구·산격동 1443-5 / 전화 950-2821 / 전송 955-9185  
의사당당관설 의사당당관 정낙재 의사당당사무관 최기환 담당자 신우철

문서번호 의사 13131-8

시행일자 2000. 1. 14. ( )

수신 받는곳 참조  
참조

### 제 목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준칙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운영 13130-27(2000.1.10)과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 8. 31, 법률 제6,002호 및 '99. 12. 31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각급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될에 따라
3.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준칙안」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시·군에서는 동 조례의 제정·공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준칙안 1부.  
2. 정례회제도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정례회 집회일 및 회기결정 관련자료 1부. 끝.

경상북도의회의

받는 곳 : 시장·군수.



##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통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월 ○일에 집회한다. 다만, 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월 ○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정례회 집회일 및 회기결정 관련자료

### □ 정례회 집회일

각급 자치단체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의와 예산심의수요, 기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심의일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실정에 알맞게 자율적으로 규정

###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 행정사무감사 회기일수(시·도 : 10일 이내, 시·군·자치구 : 7일 이내) 및 제1차 정례회 회기내 실시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 결산서 작성기한(출납폐쇄후 80일이내) 및 제1차 정례회 회기내 처리
- 지방자치법 제118조
  - 예산안 편성기한(시·도 :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시·군·자치구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 예산안 의결기한(시·도 :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시·군·자치구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 지방재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 출납폐쇄기한(회계연도 종료후 2월) 및 결산서 제출기한(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 관 련 법령(발 췌)

### □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항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⑦<생략>

제38조 (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1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정례회의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시·도의회의 경우 40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이내로 한다.

③년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년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④<생략>

제125조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겸사위원의 겸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③<생략>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  
②~④<생략>

제19조의4 (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8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 ③ 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 (결산승인)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6조2 (검사위원의 선임)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4조 (출납폐쇄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로 폐쇄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세입·세출결산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 1. 의 안

- 가. 의안번호 : 제103호
- 나. 의 안 명 : 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다. 발의자 : 이재창 의원 외 4인

###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 및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연1회 개최하던 정기회를 연2회 정례회로 운영하고자 함.
- 나.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함.
- 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8일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 집회하도록 함.
- 라.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을 승인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하도록 함.

### 4. 검토의견

본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 및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연1회 개최하던 정기회를 연2회 정례회로,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8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 집회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등을 승인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하도록하는 것임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상 결산서 제출기한이 6. 30.로 되어 있고,  
의장단의 임기가 7월초로 되어 있어,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장단 임기가 끝난후가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국·도비 보조내시 결정 및 집행부에  
예산안 승인·의결 통보일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12월 초순이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000. 4.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순